

## 《길음3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조건》

### ■ 인가조건

1. 사업구역밖에 위치한 길음8단지과 길원초등학교 사이간 옹벽(으뜸이길 주변) 구간 철거를 위해 착공전까지 길원초등학교와 길음8단지 입주자대표회와 사전 동의절차를 진행하여 기존 철거범위 외 구간을 확대하여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지 남측 소공원으로부터 길원초등학교간 조성예정인 공공보행통로는 인접 8단지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 및 길원초등학교 출입구 폐쇄 요청민원에 따라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지 북측 송인로변 횡단보도앞 옐로포켓 설치를 위해 각각부 정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촉진계획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착공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항목별 적정여부에 대한 감리자 검토 의견 및 날인 후 제출바랍니다.
5. 굴토 및 흙막이 공사와 단지 구성에 따른 경사면의 안정성 검토 등 토지굴착 계획 및 지반조사보고서, 흙막이 설계도서 및 옹벽 설계도(평면도,구조도 등) 등을 제출하여 착공전 서울시 건축위원회(굴토분야)심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지반 침하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 포함하여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7. 귀 조합에서 설치예정인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 등)에 대하여 실시설계 도서 및 공사관계자(시공자,감리자) 선정서류 등을 포함하여 착공계를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착공전까지 소방시설물에 대한 관할소방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